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출·보증과 연계하지 않은 출자 허용 및 투자대상
확대 등〉

■ 진성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117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1. 대출·보증과 연계하지 않은 출자 허용 및 출자 조건 강화(안 제20조의2제2항 및 제25조제3항)	3
2. 간접투자대상 확대 및 간접투자 건별 승인에서 연간 한도승인 방식으로 변경(안 제20조의2제3항 및 제21조제1항)	10
[참고]	2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진성준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5. 9. 18.

다. 회 부 일 : 2025. 9. 19.

II.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수출입은행은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개발 초기에 출자가 결정되어야 사업의 수주지원이 용이하나, 현행법상 대출 승인 이후 해당 대출과 연계하여 투자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어 지분투자를 통한 효과적인 사업 수주지원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처한 상황임.

또한, 최근 성장하고 있는 AI 첨단산업, K-콘텐츠 산업의 효과적인 해외진출 지원 및 투자기회 발굴 등을 위해서는 현행법에 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에 다른 법률에 따른 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이 집합투자기구 투자 시 개별 건별로 기획재정부장관을 승인을 요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혁신산업에 대한 신속

한 투자 여건 마련이 필요함.

이에,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혁신산업 등 자금 공급에 필요한 경우 국내의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2항).

나. 한국수출입은행이 국내외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3항 및 제21조제1항).

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출자를 하면서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IV. 검토의견

1. 대출·보증과 연계하지 않은 출자 허용 및 출자 조건 강화(안 제20조의2제2항 및 제25조제3항)

현행	개정안
○ 법인에 대한 출자 등(§20의2②) - 제18조제1항 및 제2항¹⁾에 따라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 → 대통령령²⁾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대출·보증과 연계해 출자할 수 있음 ○ 업무의 제한(§25) - <신설>	○ 법인에 대한 출자 등(§20의2②) -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출자할 수 있음 ○ 업무의 제한(§25) -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를 할 때에는 관련된 사업에 대한 수익성 확보가 확실한 경우에 한함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업무) ① 수출입은행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1.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
2. 국민경제에 중요한 수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
4. 해외투자, 해외사업 및 해외자원개발의 활성화
5. 정부가 업무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수출입은행은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따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 및 보증
3. 채무의 보증
4. 정부,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5. 외국자본의 차입
6. 수출입금융채권과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7. 외국환 업무
8.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9.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따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업무

2)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조의3(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수출입은행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출자(제16조의4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제외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개정안은 자금을 공급하거나(법 제18조제1항)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법 제18조제2항) 당초 대출·보증과 연계해 출자하는 것을 대출·보증과 연계하지 않고서도 출자할 수 있도록 규율하려는 것임. 또한, 법인에 대한 출자를 할 때에는 관련된 사업에 대한 수익성 확보가 확실한 경우에 한하도록 출자 조건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제2항의 규정은 2005년 법 개정 때 신설된 내용으로, 대형 프로젝트의 국제입찰 과정에서 발주처가 공적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의 대출·보증 외에 지분참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수출입은행이 대형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특수목적법인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출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한 것임.

다만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출자업무의 지나친 확대 방지를 위해 대출·보증과 연계해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³⁾하였고, 동 규정은 현행법 제2항에 규정⁴⁾되어 있음.

공동으로 지분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2. 외국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3.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3) 재정경제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05, p. 5.
“또한 개정안은 이러한 출자의 경우에도 대출 또는 보증과 연계하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지분참여를 통한 방만한 경영의 소지를 제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②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할 수 있다.

[수출입은행법 2005년 개정 전·후 비교]

법률 제5560호 1998. 9. 16. 일부개정	법률 제7527호 2005. 5. 31. 일부개정
제20조의2 (법인에 대한 출자등) 수출입은행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등이나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조달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한민국법인 또는 외국법인(大韓民國 國民이 出資하는 外國法人을 포함한다)에 출자(株式의 취득을 포함한다)하거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제20조의2 (법인에 대한 출자) 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한민국법인 또는 외국법인(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출자(주식의 취득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 또는 보증의 대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해당 대출 또는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하는 경우 2.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등이나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자금조달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에 출자할 때 대출·보증을 의무적으로 연계해야만 출자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사업 초기의 실패 가능성과 신용 문제로 인해 해당 법인이 사업 수주를 받기 전에는 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을 해주지 않아⁵⁾ 이와 연계한 직접투자도 할 수 없어 해당 법인은 사업 초기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2005년 이후 현재까지 현행 규정에 따라 대출 또는 보증과 연계해 출자한 실적은 ‘해외 수주지원(투자개발형 사업) 대출연계’ 1건(44억원) 및 ‘해외투자(기업금융) 대출연계’ 5건(260억원), ‘채무증권(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투자’ 5건(250억원)으로, 총 11건(554억원)

5) 「한국수출입은행 여신세칙」 내 다수 규정

에 불과함.

[수출입은행 대출·보증 연계 출자 실적]

(단위 : 억원)

유형	사업명	승인시기	승인액	집행액	사후관리	
					회수액 ¹⁾	장부가
수주지원 대출연계	인니 세망카 수력발전사업 ²⁾	'14.10.	44	44	-	44
해외투자 (기업금융) 대출연계	코오롱생명과학 미국 현지법인 ('20 종결, '20.11. 기준)	'15.12.	117	117	142	-
	방주 베트남 현지법인	'16.9.	42	42	0.1	-
	와이지원 미국 현지법인	'17.12.	19	19	25	-
	디알엑시온 인도 현지법인	'18.12.	40	40	52	-
	호원 터키 현지법인	'18.12.	42	42	51	-
채무증권 (전환사채) 투자	이랜텍 베트남 현지법인	'16.1.	35	35	53	-
	파워로직스 베트남 현지법인	'16.5.	30	30	37	-
	성우하이텍 인도 현지법인	'17.12.	100	100	110	-
	월비스 도미니카공화국 현 지법인	'18.10.	35	35	39	-
	대원전선	'21.5.	50	50	54	-

주 : 1) 회수액은 투자원금 및 배당 포함

2) 현재 사업 진행 중(이외 사업은 회수 완료)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의 출자액 1조 7,507억원(2024년 말 기준) 중 제2항에 따른 대출·보증 연계 출자액 비중은 3.2%⁶⁾임. 현행과 같이 대출 또는 보증과 연계한 경우에만 수출

6) □ 수은법 20조의2 1항 관련 출자(정부정책지원출자 등) 내역 (2024년 말 기준)

○ 1호에 따른 지원금액 : 총 16,953억원 지원*

* 수은법 20조의2 1항 및 2항에 따른 총투자액(17,507억원)의 96.8%

- 정부정책지원 출자 8건(한국해양진흥공사 등): 8,678억원

- 국외현지법인 출자 5건(수은영국은행 등): 8,265억원

- 국내자회사 출자 1건(수은플러스): 10억원

○ 2호에 따른 지원실적 : 없음

입은행의 출자가 가능한 경우, 이미 대출 등이 과다하여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가진 법인은 추가적인 대출을 받지 않으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출자를 통한 수출입은행의 직접투자도 받을 수 없어 해외 진출 및 수주 지원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해외투자·해외사업 등에 대해 대출·보증과 연계 없이 출자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법인이 수주 이전 사업 발굴 단계에서부터 수출입은행의 직접투자를 받아 효과적으로 수주를 달성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히 벤처·중견기업이 많은 신산업 부문은 성장 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초기의 개발비·인건비로 인한 취약한 재무 상태로 적격 신용등급을 받을 수 없어 수출입은행의 대출·보증 연계가 어려움. 개정안을 통해 현행 규정에 따를 때 수출입은행이 해당 법인에 대해 출자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대출·보증과 연계하지 않고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적절한 수익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도록 출자 조건을 두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5년 9월 30일에 의결

□ 수은법 20조의2 2항 관련 출자(대출, 보증 연계) 내역

○ 지원금액 : 총 554억원 지원*

* 수은법 20조의2 1항 및 2항에 따른 총투자액(17,507억원)의 3.2%

되어 개정안의 취지가 이미 대안에 반영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 (생략)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할 수 있다.</u> <후단 신설>	② ----- 제18조제1항에 따른 <u>자금공급</u> ----- ----- ----- 출자할 ----- 이 경우, 관련된 사업에 <u>대한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다.</u>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 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 법인이나 외국법인(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출자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②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할 수 있다.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 ----- ----- ----- ----- 출자할 -----.
제25조(업무의 제한) ①·② (생략) <신설>	제25조(업무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출입은행은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를 할 때에는 관련된 사업에 대한 수익성 확보가 확실한 경우에 한한다.

2. 간접투자대상 확대 및 간접투자 건별 승인에서 연간 한도승인 방식으로 변경(안 제20조의2제3항 및 제21조제1항)

현행	개정안
○ 법인에 대한 출자 등(§20의2③) - 제18조제1항 각 분야에 자금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부장관 승인 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음 ○ 업무계획의 승인 신청(§21①) -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해 연도시작 1개월 전 기재부장관에 제출해 승인받고,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에 보고 - 제20조의2제2항(법인 출자) : 연간 한도승인 방식 제20조의2제3항(집합투자기구 앞 간접투자) : <u>건별 승인방식</u>	○ 법인에 대한 출자 등(§20의2③) - 제18조제1항 각 분야에 자금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음 ○ 업무계획의 승인 신청(§21①) - (현행과 같음) - 제20조의2제2항(법인 출자) : 연간 한도승인 방식 제20조의2제3항(집합투자기구 앞 간접투자) : <u>연간 한도승인 방식</u>

가. 간접투자대상 확대

개정안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8)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뿐만 아니라 여타 집합투

7)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조의4(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사업, 해외자원개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위하여 조성된 집합투자기구
 2.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집합투자기구
-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집합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8) 「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자기구(투자조합)에도 투자(간접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출입은행은 2009년부터 온실가스저감 등 기후변화대책을 위한 국제협력과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해외 투자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 기구에 간접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

[수출입은행법 2009년 개정 전·후 비교]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법률 제9355호 2009. 1. 30. 일부개정
제20조의2 (법인에 대한 출자) 수 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 법인이나 외국법인(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출자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이나 제19조와 제20조에 따른 자금조달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제20조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 법인이나 외국법인(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출자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이나 제19조와 제20조에 따른 자금조달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② 수출입은행은 해외투자자와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 9)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449호, 2009. 4. 30. 일부개정)
- 제16조의2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투자할 수 있

이후 2014년 법 개정으로 해외투자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뿐 아니라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¹⁰⁾의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 간접투자를 할 수 있도록 투자범위가 확대됨. 이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은 집합투자기구에 2022년 2,161억원, 2023년 1,625억원, 2024년 3,328억원(누적 기준 1조 4,218억원) 투자를 하고 있음.

[수출입은행법 2014년 개정 전·후 비교]

법률 제9355호 2009. 1. 30. 일부개정	법률 제12270호 2014. 1. 21. 일부개정
제20조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 법인이나 외국법인(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출자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이나 제19조와 제20조에 따른 자금조달 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 법인이나 외국법인(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출자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자금조달업무 등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②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

는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집합투자기구
2. 해외의 석유, 가스 및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집합투자기구
3. 그 밖에 해외투자와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조성된 집합투자기구로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집합투자기구

10)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업무) ① 수출입은행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1.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
2. 국민경제에 중요한 수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
4. 해외투자, 해외사업 및 해외자원개발의 활성화
5. 정부가 업무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다른 법률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② 수출입은행은 <u>해외투자</u> 와 <u>해외자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다.	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할 수 있다. ③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각 분야에 <u>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다.
--	---

2014년 법 개정으로 간접투자가 가능한 분야는 확대됐지만, 투자대상은 여전히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 한정돼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벤처투자조합 등 개별법상 투자조합에는 투자할 수 없어 벤처투자를 위한 수출입은행의 적극적인 지원 및 참여가 제약되는 문제가 있음.

[수출입은행법 개정에 따른 간접투자 대상·범위]

구 분	2009년 개정	2014년 개정	개 정 안
대 상	집합투자기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범 위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1.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 2. 국민경제에 중요한 수입 3.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 4. 해외투자, 해외사업 및 해외자원개발의 활성화 5. 정부가 업무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최근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¹¹⁾와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개별법상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모두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¹²⁾.

11) 「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100인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249조의11제6항에 해당하는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정부가 개별법상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모태펀드인 한국벤처투자¹³⁾를 설립해 약 10조 7,286억원의 펀드를 조성¹⁴⁾하는 등 2022년 기준 총 17조 5,780억원의 금액이 벤처기업 등 투자를 위해 조성¹⁵⁾되었음에도 해외진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투자는 2022년 3,225억원¹⁶⁾인바, 결성된 펀드 대부분이 해외진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됨¹⁷⁾.

[2014년 이후 해외진출 주목적 벤처투자 현황]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신규 건수	4	6	10	7	4	1	2	1	2	3
금액 (억원)	3,450	2,785	5,098	5,439	2,510	1,950	420	220	1,175	3,225

자료: 벤처캐피탈협회

1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약정액 : 2015년 58.5조원 → 2023년 136.4조원 (출처 : 금융감독원)
개별법상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신규투자금액 : 2019년 7.5조원 → 2023년 10.9조원 (출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 ①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의 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를 설립한다.

제67조(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등) ① 한국벤처투자는 제66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2. 벤처투자조합 결성과 업무의 집행
3. 벤처투자
4. 해외벤처투자자금의 유치 지원
5.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육성
7. 벤처투자 성과의 관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한국벤처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은 한국벤처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벤처투자에 출자할 수 있다.

14) 2023. 12. 31. 기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15) '22년 전체(범부처)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집계동향, 한국벤처캐피탈협회.

16) 출처 : 벤처캐피탈협회. '22년 하반기부터는 VC 목적별 구분 데이터 미존재

17) 이에 대해 한국벤처투자는 국내투자 목적의 벤처생태계를 육성시키기 위해 펀드를 조성·운용하고 있어 해외진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 규모가 적다는 입장임.

개별법상 벤처투자조합의 경우는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의 간접투자가 불가능¹⁸⁾해 해외진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에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¹⁹⁾.

실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문조사(2019년)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98.2%가 해외진출 계획이 있음에도 그 중 약 33%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점을 애로사항으로 응답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법상 투자조합과 연계하여 투자자금을 조달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함²⁰⁾.

이에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뿐만 아니라 개별 투자조합에 대해서도 간접투자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최근 성장하는 혁신산업의 효과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투자기회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수출입은행이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5년 9월 30일에 의결되어 간접투자대상을 확대

18)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과 같은 타 정책금융기관은 수출입은행과 달리 투자대상을 특정하지 않아 다양한 투자집합기구에 별도의 제약 없이 투자가 가능한 상황임.

19) 수출입은행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전략산업에 중점 투자하는 ‘첨단전략산업 육성펀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개별법상 벤처투자조합들이 펀드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현행법상의 제약으로 벤처투자조합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사업이 추진됨. 연합뉴스포맥스, ‘수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펀드에 1천500억 출자’, 2024. 3. 25.

20) [참고 2] ‘벤처기업 해외진출 수요’ 참조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이미 대안에 반영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 ② (생략) ③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u>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다.</u>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u>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u> ----.

나. 간접투자 건별 승인에서 연간 한도승인 방식으로 변경

개정안은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출자(직접투자)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앞 투자(간접투자)에 대해서도 연간 한도 승인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수출입은행은 당초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투자 건별로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출자(직접투

자)에 대해서는 건별 승인이 아니라 연간 한도 승인방식으로 승인절차가 완화되었음.

[수출입은행법 2014년 개정 전·후 비교]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법률 제12270호 2014. 1. 21. 일부개정
제20조의2 (법인에 대한 출자) 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한민국법인 또는 외국법인(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출자(주식의 취득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 또는 보증의 대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해당 대출 또는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하는 경우 2.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이나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자금조달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 법인이나 외국법인(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출자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자금조달업무 등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②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①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계획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공급계획과 제4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업무계획에는 분기별 업무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①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출자에 대한 연간 승인 한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계획은 자금공급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제1항의 업무계획에는 분기별 업무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안과 같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간접투자)에 대해서도 건별 승인이 아니라 연간 한도 승인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수출입은행이 보다 자율적으로 간접투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²¹⁾ 개정안을 통해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이전보다 신속하게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주무기관인 금융위원회의 투자 건별 승인절차 없이 내부 승인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있음.²²⁾

21) 간접투자 연간 승인 규모 : 2022년 2,161억원 → 2023년 1,625억원 → 2024년 3,328억원

22)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기재부 승인 전에 수출입은행에서 자체 심사 기구를 통해 투자의 타당성, 리스크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승인 방식 변경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며, 수출입은행도 우리 기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 지원을 위해 제약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 · ② (생략) ③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다.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에 ----- ----.
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①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출자에 대한 연간 승인한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해당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① --- ----- ----- 출자 및 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대한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55

참고 1

벤처투자 동향 [자료 : 벤처캐피탈협회]

1. 펀드결성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3년(비중)	'24년(비중)	증감	증감률
벤처투자조합(A)		68,031 (51.4)	57,571 (53.3)	△10,459	△15.4
	신기술투자조합	62,297 (47.0)	47,979 (44.4)	△14,318	△23.0
	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	2,142 (1.6)	2,527 (2.3)	385	18.0
	소 계(B)	64,439 (48.6)	50,506 (46.7)	△13,933	△21.6
합 계(A+B)		132,469 (100.0)	108,077 (100.0)	△24,392	△18.4

2. 벤처투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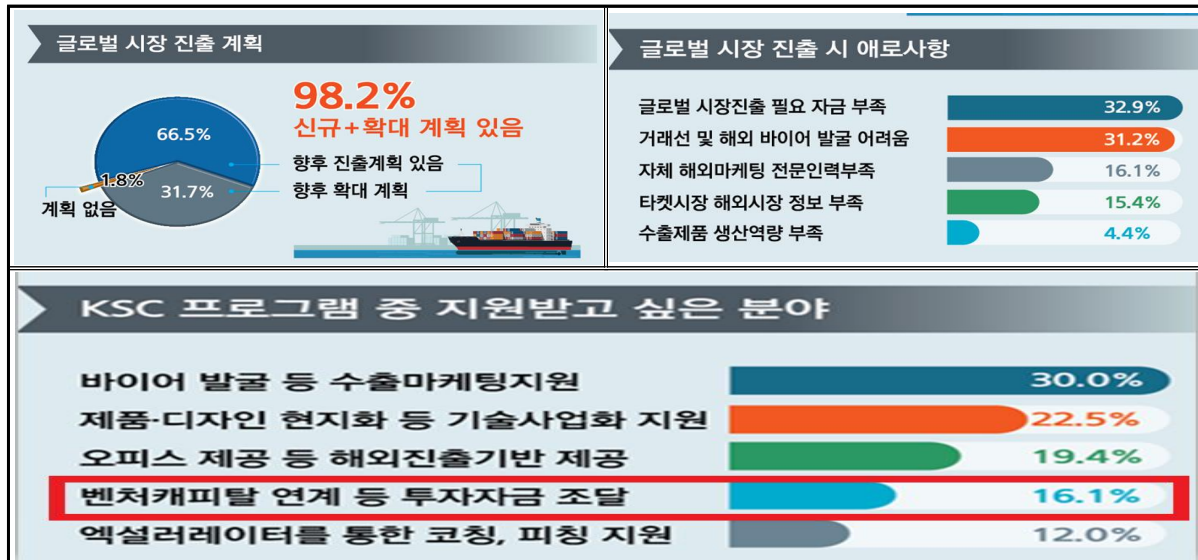
(단위 : 억원, %)

구 분		'23년		'24년		증감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감	증감률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A)		53,977	45.4	66,315	51.2	12,338	22.9
그 외 조합 (a)	신기술투자조합, 회사	55,156	46.4	53,142	41.0	△2,015	△3.7
	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	1,435	1.2	2,142	1.7	707	49.2
정책 금융 기관 (b)	산업은행	4,903	4.1	4,518	3.5	△385	△7.9
	기업은행	1,753	1.5	2,022	1.6	269	15.3
	신용보증기금	664	0.6	658	0.5	△6	△0.9
	기술보증기금	981	0.8	741	0.6	△240	△24.5
소계((a)+(b) = B)		8,301	7.0	7,939	6.1	△362	△4.4
합계(A+B)		118,870	100.0	129,538	100.0	10,668	9.0

참고 2

벤처기업 해외진출 수요 (자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설문 조사 결과('19년) >



< 스타트업 해외진출여부 및 의향('20년) >

□ 해외사업진행 여부	진출 37.3%	비진출 62.7%
□ 해외사업진출 의향	진출 의향 70.2%	부정 29.8%

※ 창업기업은 해외진출시 자금확보(67%), 유통망/판로(58.4%), 네트워크(46.5%)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22.6월, 한국엔젤투자협회 TIPS기업 설문조사)